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1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배상현
변 론 종 결 201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1.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7.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 2. 2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4무 2608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같은 센터 경비실(이하 '이 사건 경비실'이라 한다) 앞까지 약 5m 거리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8.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8. 14. 사면을 받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말소되었고, 2015. 9.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바. 이 사건 주차장은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 정문 밖 외벽 부근에 위치한 사외주차장인데, 정문 앞에 있는 이 사건 경비실과 5m 정도 떨어져 있고, 위 주차장과 경비실은 각각 대로에 바로 접하고 있어 도로에의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위 도로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이나 이 사건 경비실 앞까지 이르는 길에는 별도로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원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본안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9. 23.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차장 및 이 사건 경비실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자동차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원고는 자동차 매매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차주에게 향의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괄호 안에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만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과 이 사건 경비실은 각각 대로에 바로 접하고 있어 도로에의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도로에서 이 사건 주차장이나 이 사건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별도로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

원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아야 하고,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허용 한도인 혈중알콜농도 0.05%의 2배를 훨씬 넘는 0.126%에 이르는 점, ② 원고에게 반드

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직업 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비록 1회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 거리나 운전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우정민
	판사	이수주